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나50599(본소), 2020나50605(반소) 판결
[매매대금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의 소]

재판경과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28776(본소), 2021다228783(반소)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나50599(본소), 2020나50605(반소)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10 선고 2018가소380207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이정현

변론종결 2021. 3. 11.

판결선고 2021. 4. 15.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10. 선고 2018가소380207(본소),
2018가소497648(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2018. 1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4,822,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4,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4,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C’란 상호로 홈페이지 제작 업체를 운영하던 원고는 2018. 4. 16. 피고와 사이에 D 웹 서비스 제작 계약(이하 ‘이 사건 제작계약’이라 하고, 원고가 제작하기로 한 웹서비스를 ‘이 사건 홈페이지’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웹 서비스 계약서

의뢰자 피고와 원고(상호명: C)는 웹서비스 제작 및 기타 이에 부수한 서비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기로 약정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웹서비스’란 피고가 의뢰한 내용을 문자나 그림 등을 이용하여 HTML등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종합 구성하여 인터넷상에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요구사항 명세서’란 본 계약에 의하여 제작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업무의 범위 등을 상세히 기술한 문서 혹은 그에 준하는 서면을 의미하며, 서비스 제작 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 역할을 한다.

제4조(대금지급)

① 본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작비용은 총 구백만원정(9,000,000원)으로 하며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② 위 제1항의 대금은 계약 체결시 대금의 5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서비스 제작 완료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제작완료)

① 원고는 2018. 5. 18.까지 웹서비스의 완성품을 업로드한 후, 피고에게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위 제1항에 따른 원고의 검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수하여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한다.

③ 피고의 검수결과, 웹서비스의 완성품에 이상이 없음을 원고에게 통보하면, 당해 웹서비스의 제작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④ 피고가 제1항의 기간에 당해 서비스 제작의 검수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웹서비스의 제작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제8조(지체상금)

② 원고는 위 제7조 제1항의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는 지체일수에 계약금액의 2/100를 곱한 금액을 위 제4조 제2항의 잔금에서 공제한다.

제9조(검수방법 및 하자보수)

① 검수의 기준은 상호간에 협의한 요구사항 명세서에 한정되어야 하며, 이를 초과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피고는 제1항에 의거하여 수정 및 보완 또는 재개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고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검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기간은 검수결과 통보일로부터 3개월로 하며, 하자보수 기간 중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원고는 무상으로 피고가 요구하는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작계약 당일인 2018. 4. 16. 원고에게 4,950,000원(= 계약금 4,500,000원 + 부가세 45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24. 피고를 위하여 제작한 이 사건 홈페이지를 업로드하였고, 2018. 7. 2.

피고에게 이 사건 홈페이지 제작완료를 통보하였는데, 피고는 2018. 8. 13. 원고에게 이 사건 홈페이지 미완성을 이유로 이 사건 제작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 반소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8. 5. 24. 이 사건 홈페이지 제작을 완료하여 검수를 요청하였고, 이후 2018. 7. 27.까지 이 사건 홈페이지에 대한 피고의 수정 요청을 모두 수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작계약의 잔금 4,950,000원(부가세 포함)에서 지체상금 127,800원을 공제한 4,822,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홈페이지와 ‘D’ 어플리케이션의 연동과 관련된 알림 기능의 오류는 어플리케이션 상의 오류이고 원고가 이 사건 제작계약과 관련하여 책임을 져야하는 기능상의 오류가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제작계약에 대한 해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제작한 이 사건 홈페이지는 ‘D’ 어플리케이션과의 연동을 위한 푸시 기능, 프린트 출력 기능 등 필수적인 기능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가 수차례 위 기능들의 보완을 촉구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보완하지 못하여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제작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제작계약의 잔금 청구는 이유 없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작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계약금(부가세포함) 4,9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먼저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2018. 5. 24. 이 사건 홈페이지를 업로드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검수를 요청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작계약의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작계약의 해제에 관한 항변을 함과 동시에 반소로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작계약 체결 전 모바일기기에서 활용되는 ‘D’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2018 3. 27. 피고에게 보낸 이 사건 홈페이지 제작을 위한 견적서의 기능구현에 ‘반응형(PC/Mobile/PAD등) 연동작업, 기존 DB와 웹솔루션 연동’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와 같은

기능 구현을 위하여 원고가 2018. 4. 16. 위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체로부터 어플리케이션 계정과 비밀번호를 통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작계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한 이 사건 홈페이지에는 위 모바일기기에서 활용되는 'D' 어플리케이션과의 연동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갑 제3, 6호증, 을 제6, 7, 9(가지번호 포함), 11,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5. 24.경 이 사건 홈페이지를 업로드하였으나 위 'D' 어플리케이션과의 연동 기능을 포함한 여러 기능 등이 작동되지 않거나 오류가 있었던 사실, 피고가 2018. 6.경부터 기능 오류의 수정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원고가 2018. 8.경까지 이를 보완하지 못한 사실, 피고가 2018. 8. 6. '1주일 동안 보완하라'는 취지의 최고를 한 후 2018. 8. 13. 이 사건 제작계약을 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홈페이지에 대한 검수를 요청하였으나 주요 기능의 오류로 검수를 통과하지 못하였고, 결국 이 사건 제작계약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제작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고 이 사건 홈페이지에 대한 검수절차를 통과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제작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작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계약금 4,950,000원(부가세 포함) 및 이에 대하여 위 돈을 지급받은 이후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8. 14.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분 송달일인 2018. 1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며, 반소에 관하여 위에서 인정한 돈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원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김정현, 판사 안현정